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74
----------	-------

발의연월일 : 2018. 5. 8.

발의자 : 정태옥 · 박인숙 · 김성찬
이채익 · 박완수 · 추경호
이종배 · 김도읍 · 정갑윤
김석기 · 박대출 · 김정재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하위법령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40%이하, 30% 이하인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14조의 2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수급자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2 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 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수급자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 람에게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 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다.</u></p> <p><u>③ 국가보훈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수급자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u></p>